

#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69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이철규 · 박상웅 · 이인선  
김은혜 · 박성민 · 강승규  
유상범 · 서일준 · 김대식  
조지연 · 김선교 · 김성원  
의원(12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자녀의 승계 기피 등으로 구조적인 후계자 부재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친족 중심 기업승계에서 벗어나 친족 외의 자에게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승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적·사회적 자산인 중소기업이 승계에 실패하여 소멸로 이어질 경우 우수기술의 활용 단절과 고용 감소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 성장동력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자를 발굴·육성하여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승계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자산인 중소기업

의 계속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등(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경영자 고령화 및 후계자 부재로 인한 경영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자를 발굴·육성하고 승계 후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계속성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업승계 관련 정책 운영에 필요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경영자 연령 등 정책의 적용대상 기준을 규정함.

### 나.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중소기업 승계촉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 지원, 기업승계자 발굴·육성, 기업승계 계정의 설치, 자금 등의 지원, 기업승계 지원기관의 운영 및 기업승계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규정함.

### 다. 기업승계에 대한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과 「상법」상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및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라.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및 요건, 기업승계에 수반하

는 비용 지원, 등록된 자문·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등록의 말소·취소 등을 규정함.

마.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과 벌칙 및 과태료(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기업승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의 위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뇌물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및 자문·중개업자 등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함.



##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초래하는 경영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자를 발굴·육성하여 후계자 부재를 해소하고 승계 후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자산인 중소기업의 계속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업승계”란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상속, 증여, 주식의 양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영업양도·양수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승계자”란 제2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이전받거나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4. “승계기업”이란 이 법에 따른 기업승계가 완료되어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기업승계자에게 이전된 기업을 말한다.

5. “경영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란 기업승계 과정 및 승계기업 경영 전반에 필요한 자문·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기업승계 활성화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기업승계자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업승계가 필요한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10년 이상 경영 중인 중소기업의 승계로서 업종, 창업일, 소유지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승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제14조의 적용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제외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승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제6조(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승계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업승계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업승계 및 승계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활한 기업 승계 및 승계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승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2. 승계 후 경영안정·성장촉진·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3.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상담·자문 및 교육
4.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5. 그 밖에 기업승계자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기업승계자 발굴·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업승계자 및 기업승계를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승계 인식확산 홍보 및 기업승계에 관한 자문·중개
2. 기업승계 희망자에 대한 교육 등 역량 강화
3. 그 밖에 기업승계 촉진과 기업승계자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승계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계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업승계 촉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기업승계 촉진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지출 및 운용과 회계·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금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하여 자금의 융자, 출연,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은 원활한 기업승계와 승계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원활한 기업승계와 승계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융자지원

을 하거나 용자조건 등을 수립·운용할 수 있다.

제11조(기업승계 지원기관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기업승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업승계를 위한 정보제공과 자문 지원
3.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용자·보증을 비롯한 자금 지원
4. 그 밖에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승계 통합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플랫폼은 기술보증기금이 전담하여 관리·운영하며, 각 지원기관은 플랫폼 정보의 최신화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과 기업승계 플랫폼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업승계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3년마다 기업승계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기업승계에 대한 특례

제13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기업승계 합병절차 등의 특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위한 합병 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영업양도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5조의11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승계기업”으로 본다.

제15조(소집의 통지에 대한 특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2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장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의 등록

제16조(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의 등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과정 및 승계기업의 경영 전반에 필요한 자문·중개업을 하려는 자를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③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그 밖의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업승계에 대한 비용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를 통한 기업승계에 수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승계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①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승계 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과 인력
  2. 운영 성과
  3. 그 밖에 기업승계 자문·중개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업승계 자문·중개

업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 등록의 말소) ①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는 기업승계 자문·중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0조(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의 등록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5장 보칙

제2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4조(별칙)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